

제26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4. 1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년 4월 18일  
수석전문위원 이 한 진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19-16
- 나. 제 안 자: 황영호 의원 외 13명
- 다. 제안일자: 2019년 4월 8일
- 라. 회부일자: 2019년 4월 16일

## 2. 제안이유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및 우대 사항을 규정함.

## 3. 주요내용

- 가.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 나. 예우대상자에 대한 예우범위(안 제3조)
- 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안 제4조)
- 라. 감면에 해당되는 각각의 조례의 감면 비율을 정함으로써 개별 조례의 일괄적인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부칙 제2조)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병무청 훈령 제1482호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복지정책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4. 8. ~ 4. 15. ) 결과: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

이 조례안은 병역명문가<sup>1)</sup>에 대한 예우 사항을 정함으로써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주민으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제정내용

- 이 조례안은 총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각각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는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

1)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면하고 강서구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예우대상자를 우선하여 초청하는 내용을 정함.

○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별 세부 개정 내용을 정함.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주차관리과)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0분의 30 감면 항목 신설(안 제3조제1항 별표1 제27호)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문화체육과) - 사용료 10퍼센트 감면 항목 신설(안 제10조제3항제7호)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교육청소년과) - 평생교육관 수강료 100분의 50 감경 항목 신설(안 제18조의2제1항제7호)

- 제1항에서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30%를 감면하도록 정한 바, 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 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는 80%를, 의사상자에 대하여는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구 세입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제2항에서 강서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10%로 정한 바, 이는 구립 체육시설의 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감면율 중 가장 낮은 감면율임.
- 제3항에서 강서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의 50% 감면하도록 정한 바, 이는 현재 감면을 시행중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과 동일한 감면율임.

## 다. 종합의견

-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예우하고 있음.<sup>2)</sup>
- 이 조례안은 강서구에서도 3대가 모두 국가의 병역의무를 현역으로 복무하고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명문가를 우대함으로써 국가의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병역명문가 우대 감면율은 구 재정과 각 조례에서 정하는 항목별 감면율을 비교하여, 형평에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법령 1부.

---

### 2) 병역명문가 선정 현황(2018. 12. 31. 기준)

- 가문: 전국 4,890가문(서울 915) ○ 병역이행자: 전국 24,632명(서울 4,591)
- 표창: 전국 21가문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병무청 훈령 148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21.>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2. (생략)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생략)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등)** ①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
2.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신청)** ①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가문은 신청기간 중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한 병역명문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중인 사람은 해당 부대에서 의무복무기간을 명시한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인정하여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병역명문가 선정 등)** 지방병무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계획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한 때에는(별지제5호서식),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별지제4호서식)등을 매년 2월 20일까지 명문가 친족 계보도(별표 1), 병역명문가 대표자 명단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홍보)** 혁신행정담당관은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 홍보를 주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현수막 게시 등 지방청 자체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참고자료(병무청)** (2018년 12월 31일 기준)

○ 전국 병역명문가 선정 현황

구분	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가문	전국	4,890	967	492	560	466	497	545	301	302	192	147	132	73	92	84	40
	서울	915	199	82	95	83	100	91	69	72	32	29	17	6	21	13	6
병역이행자	전국	24,632	5,077	2,670	2,932	2,490	2,520	2,642	1,444	1,426	892	679	587	325	400	367	181
	서울	4,591	1,024	445	488	474	479	452	334	330	149	136	73	26	103	53	25

○ 서울시 병역명문가 선정 현황

구분	계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가문수	686	43	38	12	43	20	24	30	10	33	18	23	38
구분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	중랑
가문수	21	25	39	23	24	60	32	40	24	28	12	13	13

- 서울시에는 병역명문가 총 686가문, 병역이행자 4,591명 선정
- 서울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가문 수: 229가문

○ 표창대상 가문 선정

구분	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스토리가문
가문수	21	2	3	5	8	3
표창(훈격)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국가보훈처장(1) /병무청장(2)
포상금(만원)	3,050	300	각 200	각 150	각 100	각 100

- 병역이행자수, 복무기간 등 고려,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